

(주)더블유쇼핑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주)더블유쇼핑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방송법 제 87조 및 제 88조와 동법 시행령 제 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 24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후보자 공모]

-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 ②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
-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 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다.

제4조 [후보자 추천]

- 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추천 단체]

- 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따라 시청자위원 추천단체를 규정한다.
- ②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및 학 교육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사회소외계층의 권익 대변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관련 단체
 12. 외국인 관련 단체(외국어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13. 물류·유통 관련 단체(방송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 ③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제6조 [위원 결격 사유]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 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 제외)
-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 ④ 기타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7조 [선정위원회 개최]

- 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 범위 및 역할 등은 당 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선정위원은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시청자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 ③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 ④ 후보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임기 및 연임]

- ① 위원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2개월 이내에 추천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 위원을 위촉 한다.
- ③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연임 여부는 위원의 출석, 의견제시, 위원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제9조 [시청자위원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신한다.

제10조 [시청자 위원 권한과 직무]

-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대표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 ② 회의의 사회는 위원장이 담당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에는 각 본부의 주요책임자가 출석하여 질의에 응하도록 한다.
- ⑤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내용과 시정, 건의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에게 통보 및 검토

하게 하여 방송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⑥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 결과를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주)더블유쇼핑이 부담하고 위원들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 [해촉]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방송사의 명예훼손, 제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